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예비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모든 예비군 훈련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「예비군법」 일부개정(법률 제20809호, 2025. 3. 18. 공포, 2025. 9. 19. 시행)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훈련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,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에게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(안 제27조제1항)
- 나.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한 교직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(안 제39조, 별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 제목“(실비변상 등)”을“(훈련비 등 지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급식비·교통비 등 실비(實費) 변상을 할 수 있다”를 “훈련비·급식비·교통비 등 실비(實費)를 지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39조 중 “법 제15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별표 제1호라목 단서 중 “법 제15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에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	법 제15조의2제1항	150	250	500
--	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별표 제2호의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한 경우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15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15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<u>실비변상 등</u>) ① 법 제11 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 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<u>급식비 · 교통비 등 실비</u> (實費) 변상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 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	제27조(<u>훈련비 등 지급</u>) ① ---- ----- ----- ---- <u>훈련비 · 급식비 · 교통비</u> <u>등 실비(實費)를 지급할 수 있</u> <u>다.</u>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</u> <u>15조의2제1항</u>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	제3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</u> <u>15조의2제1항 및 제2항</u> ----- -----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수입군부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수입군부대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<u>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</u>	<u>법 제15조의2제1항</u>	150	250	500
<u>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한 경우</u>	<u>법 제15조의2제2항</u>	30	50	1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245